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501950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민호

변론 종결 2020. 5. 8.

판결 선고 2020. 5. 22.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45,768원 및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그 중 101,361,899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2.13.까지는 연 10%의, 2019. 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그 중 101,361,899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2. 1.까지는 연10%의, 2019. 2.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 5.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8. 5.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에게, 피고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18. 접수 제970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29. 접수제1029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45,768원 및 그 중101,361,899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지분 67%를 보유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고, 피고 C, D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피고 회사는 원고와 2017. 4. 28. 신용보증기간 2017. 4. 28.부터 2018. 4. 27.까지, 보증원금을 99,450,000원,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연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9. 4. 26.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로 기업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2018. 7. 16. 위 대출금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1. 30.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은행에 101,552,3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8. 11. 30. 피고 회사로부터 640,830원을 회수한 뒤 이 중 190,413원을원금에, 나머지 450,417원을 대지급금에 각 충당하였고, 2018. 11. 30.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잔존 채무는 합계 101,845,768원(= 원금 101,361,899원 + 확정손해금 52원+ 대지급금 483,817원)이다.

다.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피고 C은 2018. 1. 11. 월 16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8. 1. 29.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근로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 회사는 2018. 1. 23. 피고 C으로부터 5,500만 원을 이자 연 15%, 차용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8. 1. 23.경부터 2018. 4. 5.경까지 총 5,5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고, 2018. 5. 18.경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피고 B는 2018. 2. 10.경 피고 D으로부터 기존에 피고 B가 2013.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 D으로부터 차용했던 50,345,000원에 더하여 추가로 2,500만 원을 차용하되,이자를 연 15%, 차용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였다.

2) 피고 D은 2018. 2. 10.경부터 2018. 5. 18.경까지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제1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의 무자력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2018. 5.경 무렵,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시가 161,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던 반면, 소극재산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 합계 약 338,457,000원, 피고 C, D에 대한 채무130,345,000원 합계 약 468,802,000원(= 168,060,000원 + 170,397,000원 + 130,345,000원) 등이 있었는데, 피고 B는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및 을 제1 내지 9,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45,7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금 101,361,899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날인 2019. 2. 1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2019. 5. 31.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는 위 원금 중101,361,899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2. 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인 2019. 2.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2019. 6. 1. 이후의 부분에 관해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8. 5.경 무렵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이미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의 기초가 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18. 7. 16.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8. 11. 30. 기업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피고 C,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당시 피고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 중 일부인 피고 C, D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2018. 1.초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가 예비사회적 기업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피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피고 회사에 5,500만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B로부터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을 뿐, 피고 회사나 피고 B의 재무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B와 사적인 친분도 없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2018.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8. 1. 29.경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이자 사내이사에 선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점, ②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대여한 금원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지급 및 회사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 C도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8. 5.경에 이르러서야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처럼 피고 회사가 피고 C이 대여한 자금으로 간신히

운영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 C은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위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은, 피고 B에 대하여 2013.경부터 2015.경까지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50,345,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2. 10.경 피고 B로부터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B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것인바, 피고 B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자로서 정당하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총 75,345,000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D이 2013.경부터 2015.경까지 발생한 50,345,000원 상당의 채권을 오랜 기간동안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2018.경에 이르러 피고 B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을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 D이 그 동안 피고 B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선의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피고 C은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은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및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및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아파트

[도로명주소] 서울 금천구 G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7층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1층 462.32㎡

1층 228.80㎡

2층 228.80㎡

3층 228.80㎡

4층 228.80㎡

5층 228.80㎡

6층 228.80㎡

7층 228.80㎡

옥탑1 26.78㎡(연면적제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105.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금천구 E 대 689.9㎡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688.9분의 49.28

위 부동산 중 피고 B 소유 1/2 지분. 끝.

